

군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협의체는 “군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(이하 “본 협의체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협의체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등을 상시 발굴하고 지원체계 구축으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위원

제3조(구성)

1. 본 협의체는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2. 위원은 제2조의 목적에 적합한 자로서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 - ①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②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
 - ③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- ④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- ⑤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
 - ⑥ 통장, 주민자치위원, 자원봉사단체 구성원
 - ⑦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
3. 동장, 주민복지팀장, 사회복지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.

제4조(권리와 의무) 위원은 본 세칙을 준수하고 협의체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하며 회의와 모임에 출석하여 발언과 의결권을 가진다.

제5조(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3. 동 협의회 운영취지,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4.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6조(위원장 및 간사)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간사를 둔다.

1. 위 원 장 : 2명(동장, 민간위원)
2. 간 사 : 1명

제7조(위원장 선출) 본 협의회회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 구 지역보장협의회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.

제3장 회의 및 역할

제9조(회의) 본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1.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2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회의록 작성) 본 협의회회의는 위원장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명단
3. 회의내용 또는 상정안건
4. 회의결과

5.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11조(역할) 본 협의체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.

1.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
2.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
3. 지역보호체계 구축·운영
4. 그밖에 관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장 기 타

제12조(비밀준수 의무) 본 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3조(의견의 청취)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에서 가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